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수원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시체육회는 「수원시체육회 정관」과 「사무국 규정」 제11장 재정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및 계약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방체육진흥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 ***,***천원(****년)과, ***,***천원(****년)을 교부 받아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의 훈련용품, 피복, 자산취득 및 전지훈련 여비로 집행하였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수원시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153조(계약방법과 준용) 제1항에 따르면 수원시체육회의 계약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과 기타 정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제9조 제1항과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체결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에서는 계약 담당자가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체육회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추정가액 2천만원 (계약금액 2천2백만원)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공개입찰을 실시해야하며 이를 부당하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체결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정기종합감사 기간(*.**~.**)** 중 수원시체육회의 국·도비 보조금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체육진흥 사업에서 동일한 업체와 같은 날 수의계약을 2건 체결하거나, 계약 시기를 다르게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유사한 품목을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여 공개입찰을 회피하는 등 다음과 같이 추정가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건의 계약을 **건으로 분할하여 체결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표] 추정가액 2천만원 초과 분할 수의계약 리스트

구분	사업연도	지출일자	거래처	사용목적	금액(천원)	추정금액(천원)
1	****	****. ** . **	A용품업체	훈련용품 구입(○○○)	** , ***	** , ***
		****. ** . **			** , ***	
2	****	****. ** . **	B용품업체	피복 구입(○○○)	** , ***	** , ***
		****. ** . **			** , ***	
3	****	****. ** . **	C용품업체	훈련용품 구입(○○○)	** , ***	** , ***
		****. ** . **	D용품업체		* , ***	
		****. ** . **	C용품업체		** , ***	
4	****	****. ** . **	E용품업체	훈련용품 구입(○○○)	* , ***	** , ***
		****. ** . **	F용품업체		** , ***	
5	****	****. ** . **	G용품업체	자산 취득(○○○)	** , ***	** , ***
		****. ** . **	H용품업체		** , ***	
6	****	****. ** . **	I용품업체	훈련용품 구입(○○○)	* , ***	** , ***
		****. ** . **	J용품업체		** , ***	
		****. ** . **	K용품업체		** , ***	
7	****	****. ** . **	L용품업체	훈련용품 구입(○○○)	** , ***	** , ***
		****. ** . **	M용품업체		** , ***	

[관계기관 의견]

수원시체육회에서는 분할발주에 관한 사항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업의 교부 시점이 회계연도 마감일에 임박한 점, 전문 체육 선수들이 사용하는 용품의 특수성이 있어 입찰을 하더라도 유찰되거나 납품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직장운동경기부에 시의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조 치 사 항] 수원시체육회장은

「사무국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추정 가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소 속 기 관] 수원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수원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¹⁾, 제36조(예산의 편성)²⁾ 및 「수원시체육회 정관」 제12조(총회의 기능),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41조(재원),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 등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체육회 사업발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 지원시책을 충실하게 구현해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집행 업무를 하고 한해 지출한 예산을 총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정관」 제41조(재원), 제46조(예산편성 및

1)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결산)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정관」 제12조(총회의 기능),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에 따라 사업결과 및 결산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 받도록 되어 있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체육회는 ****년도부터 ****년도까지 회계연도 시작과 종료를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년도 예산 편성은 이사회를 통해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만 의결하였고 예산 결산은 대의원 총회에서 시비와 함께 국도비를 포함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년도 이사회 예산편성 심의에도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만 의결하였고 사전 예산편성 없이 국도비를 집행하다 추후 임시이사회 (**월 **일자)를 통해 국·도비에 대한 제*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심의 하여 행정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 치 사 항] 수원시체육회장은

2023년도 국·도비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검토하고 향후 시비를 포함한 국·도비 예산이 누락되어 회계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담당부서 교육을 실시하고 수원시청 담당부서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회계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회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